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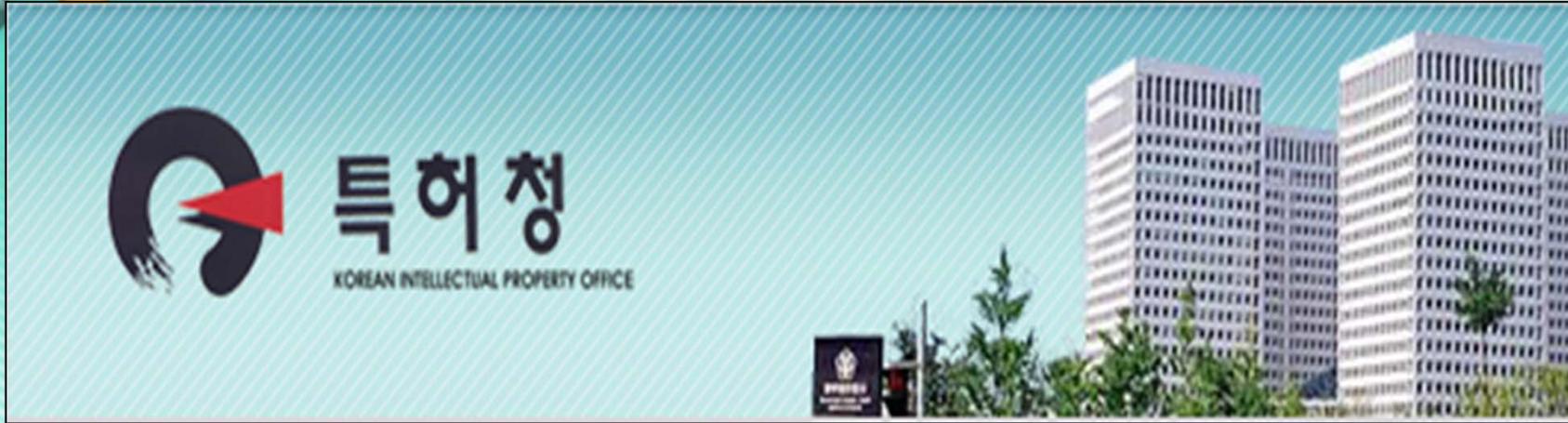
고분자아카데미

**고분자와 특허:
- 특허침해소송사례 -**

200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용병 기술서기관

특허조사관



목 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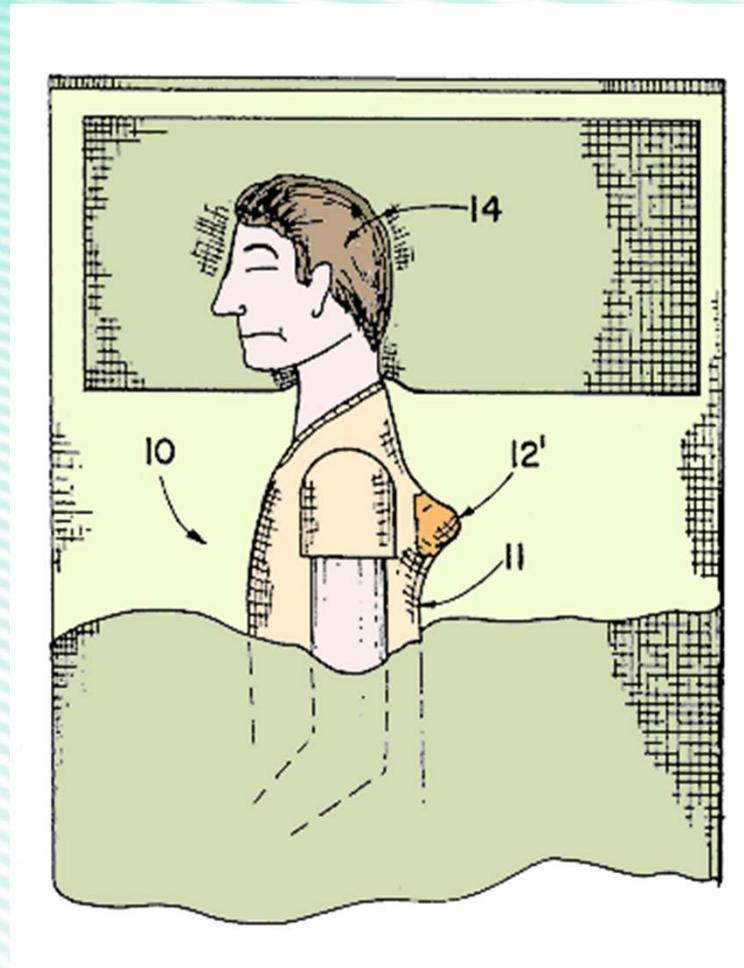
I.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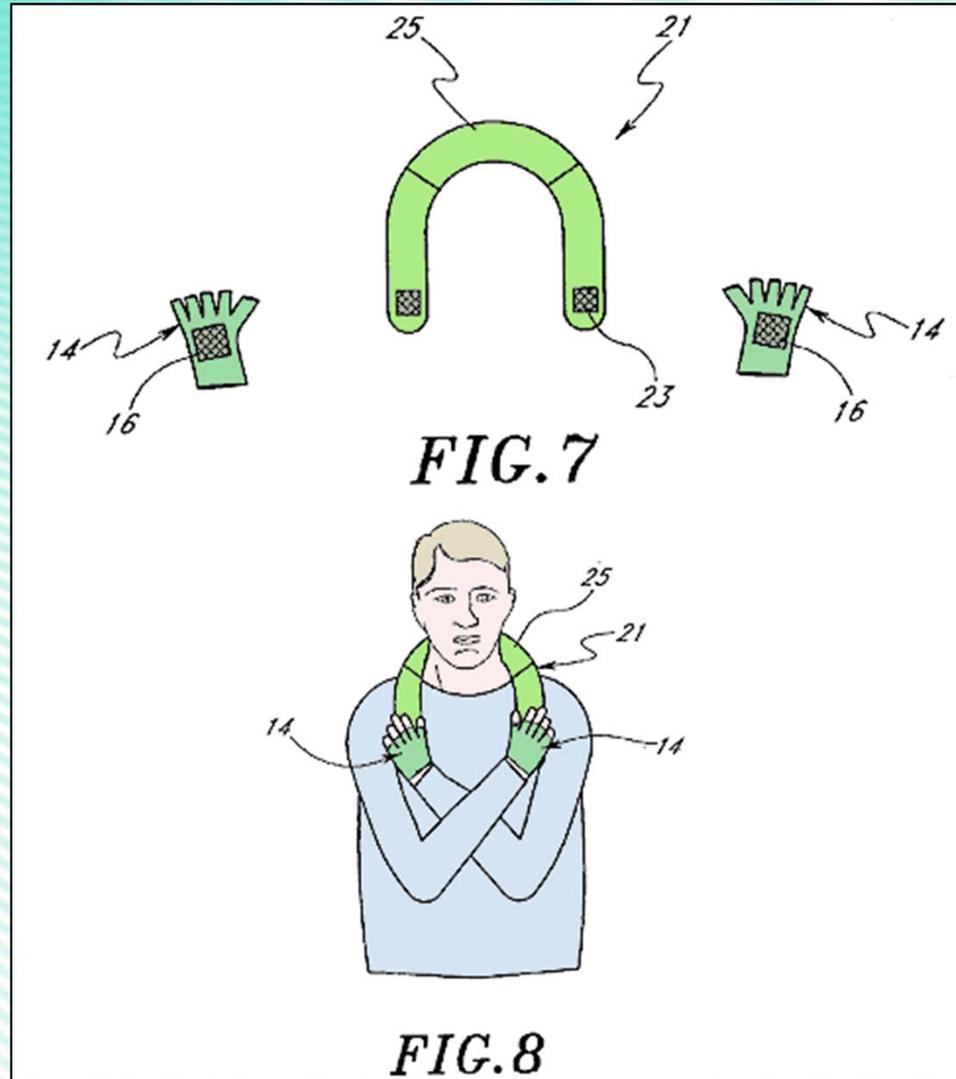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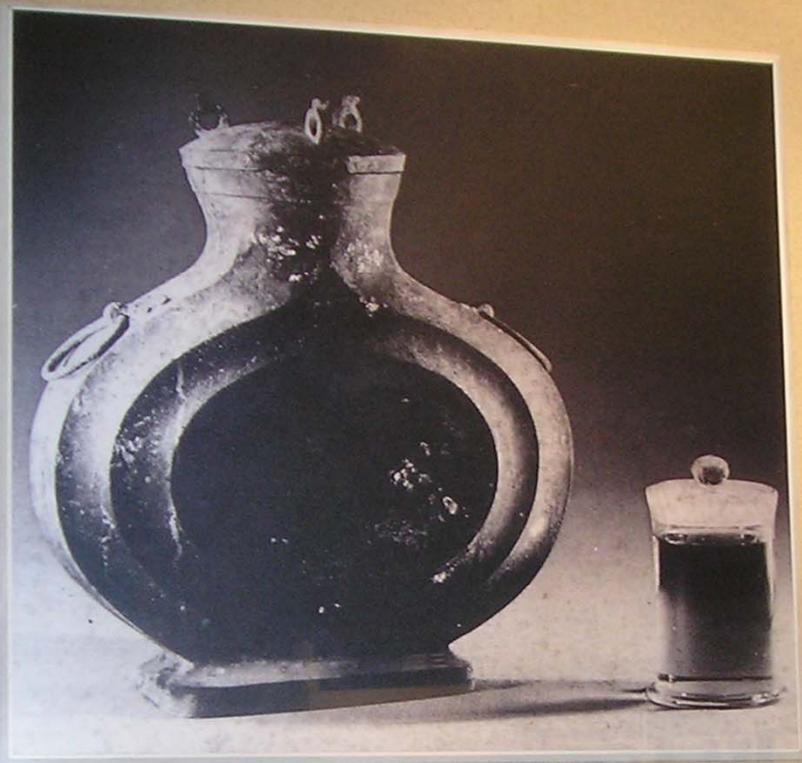
I.

미국특허(Back Buz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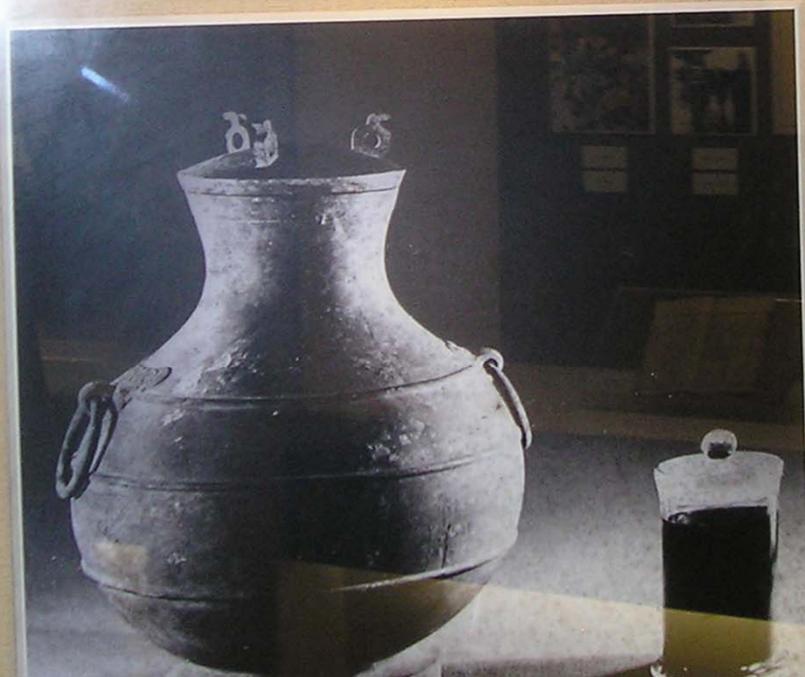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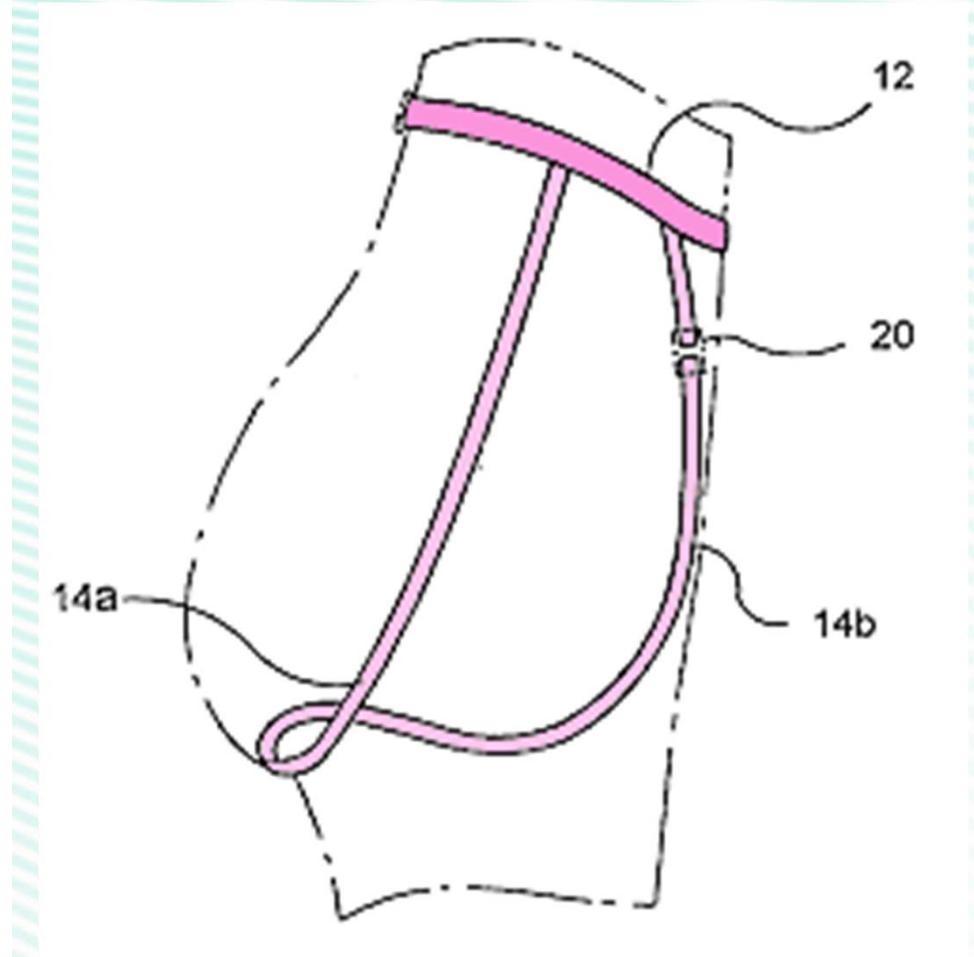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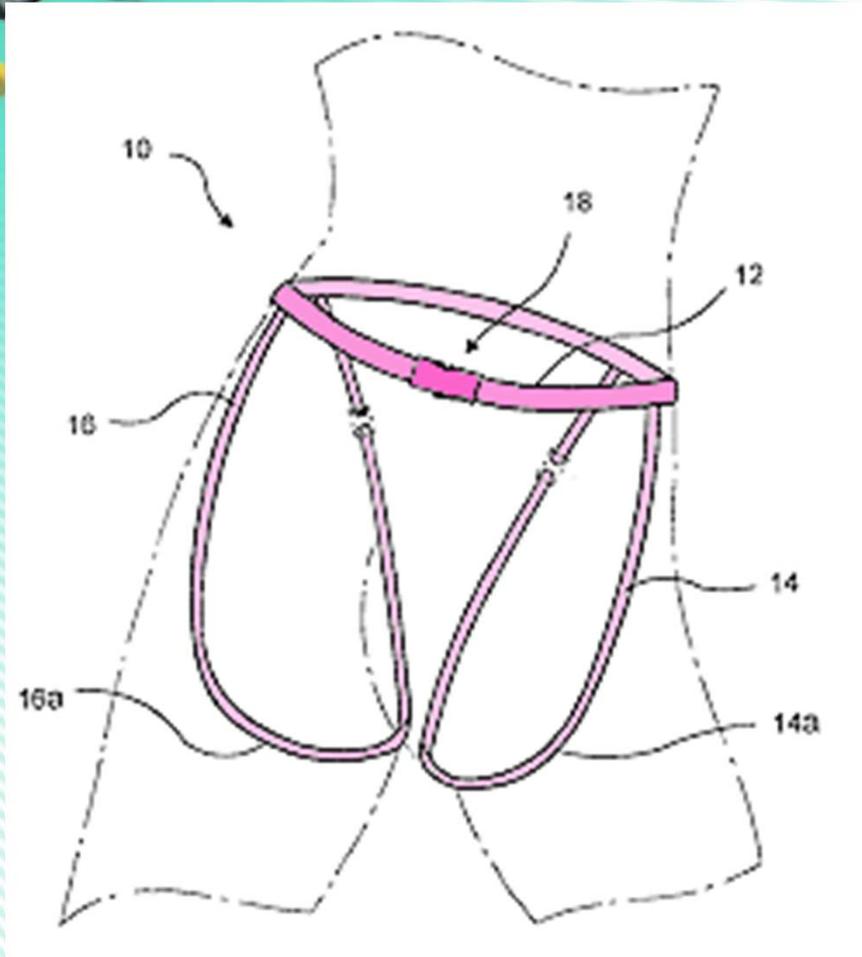


青銅器 (西周)



青銅器
商 (約1400-1028C)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원천기술 특허 황금알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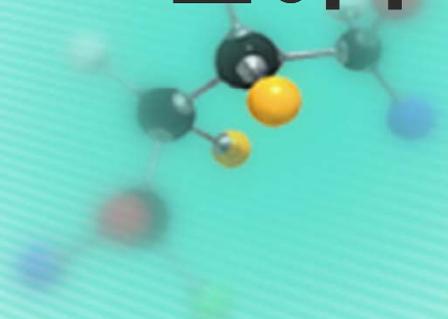
삼성 LG 특허경영 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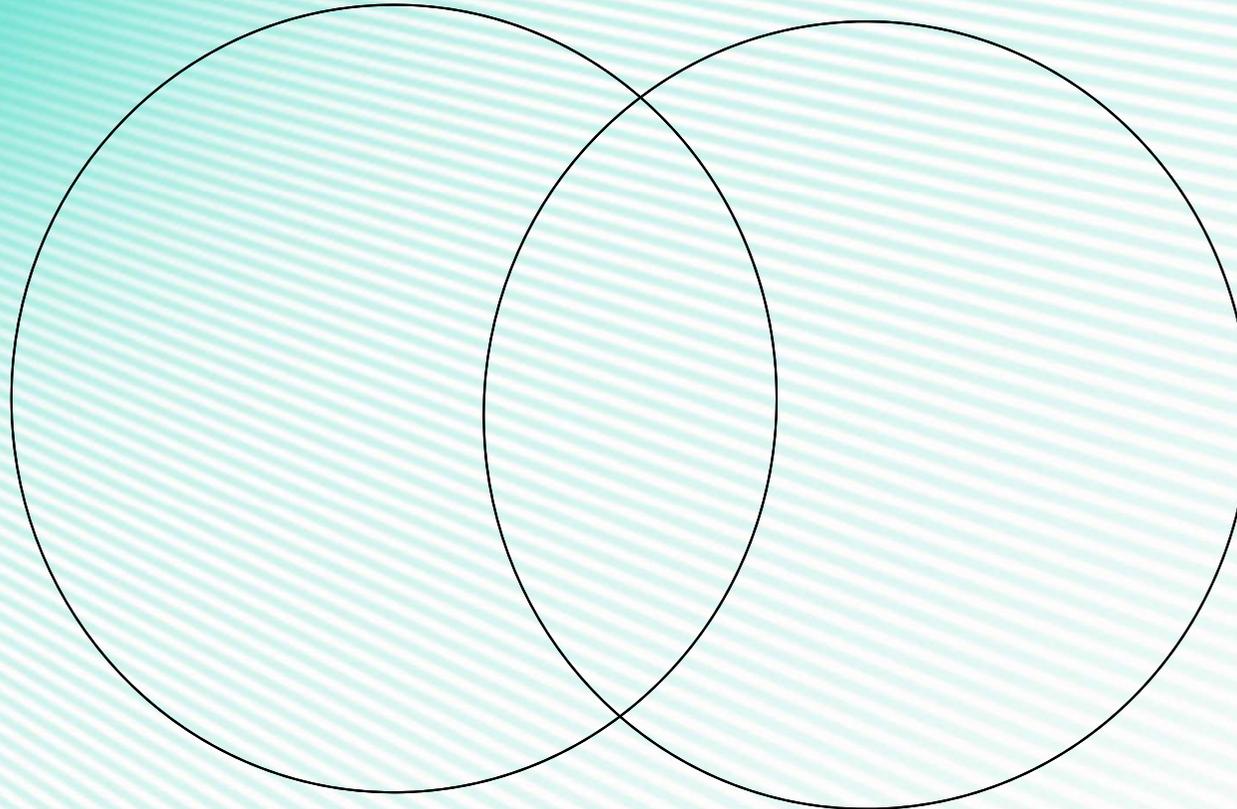
기술로 번 돈, 로열티로 다 준다



“으이구~ 이 특허괴물들...”



특허권과 침해여부



특허분쟁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분쟁 - 침해소송

- **특허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결과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인데, 가령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를 다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그 예이다.
- **특허침해소송**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기술을 몰래 도용하여 특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기술의 도용(盜用) 등으로 특허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당할 경우, 특허권자가 그 제3자에게 더 이상의 특허침해를 못하게 하거나, 침해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여 주는, 최종적인 법적보호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특허제도 전체의 成敗와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현재 특허심판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제2심(항소심)을 아직도 (일반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특허법원이 관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63(6/20)

법정



[기본내역] [중요사건]

| | | | |
|--------|--------------|---------|--|
| 사건번호 | 2006고합463 | 대표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동명판결검색 |
| 피고인명 | 황우석 | 검 사 | 홍만표 |
| 재판부 | 제26형사부 나 | | |
| 접수일 | 2006.05.12 | 종국일 | |
| 형제번호 | 2005형제136652 | 인제일 | |
| 판결문도달일 | | 기록송부일 | |
| 기록반환일 | | 기록영수일 | |
| 확정일 | | 검찰등본송부일 | |
| 상소제기내역 | | | |

[최근기일정보] 상세조회

| 일 자 | 시 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
| 2006.06.20 | 14:00 | 공판기일 | 서관 제417호법정 | 속행 |
| 2006.07.04 | 10:00 | 공판기일 | 서관 제417호법정 | |

[최근 문건접수내역] 상세조회

| 일 자 | 내 용 |
|------------|-------------------|
| 2006.06.20 | 변호인 박종록 변호인선임계 제출 |

[피고인죄명내역]

| 번호 | 피 고 인 죄 명 |
|----|---------------------------------|
|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동명판결검색 |
| 2 | 업무상횡령 ▶동명판결검색 |
| 3 | 사기 ▶동명판결검색 |
| 6 |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위반 ▶동명판결검색 |



檢 "희대의 학문적 사기" vs 辯 "여론몰이식 비판"

특허



지식재산권 체계

지식재산권 체계

산업재산권

특허 :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 :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소발명)
디자인 :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상표 : 타상품과 식별 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저작권

협약의 저작권 :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저작권 :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등

특허권

• 특허권의 개념

- 특허권은 그 권리자가 일정기간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권자 스스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동시에 타인이 그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력을 가짐.

• 특허권의 효력 범위

- 지역적 : 국내
- 시간적 : 존속기간 중
- 실체적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함



공격과 방어



주장책임/입증책임

- **주장책임** :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변론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 **주장책임의 분배** : 주장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일치하므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주장하여야 하고, 권리에 장애가 있거나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근거규정은 피고가 주장하여야 합니다.
- **입증책임** :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주장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즉,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도 요증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누구를 패소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증책임 부담자는 진위불명의 경우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입증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관계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동일한 문제의 양면으로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주장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변론주의의 결과 법원이 증인의 증언이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입증과정에서 유리한 사실이 들어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진실 또는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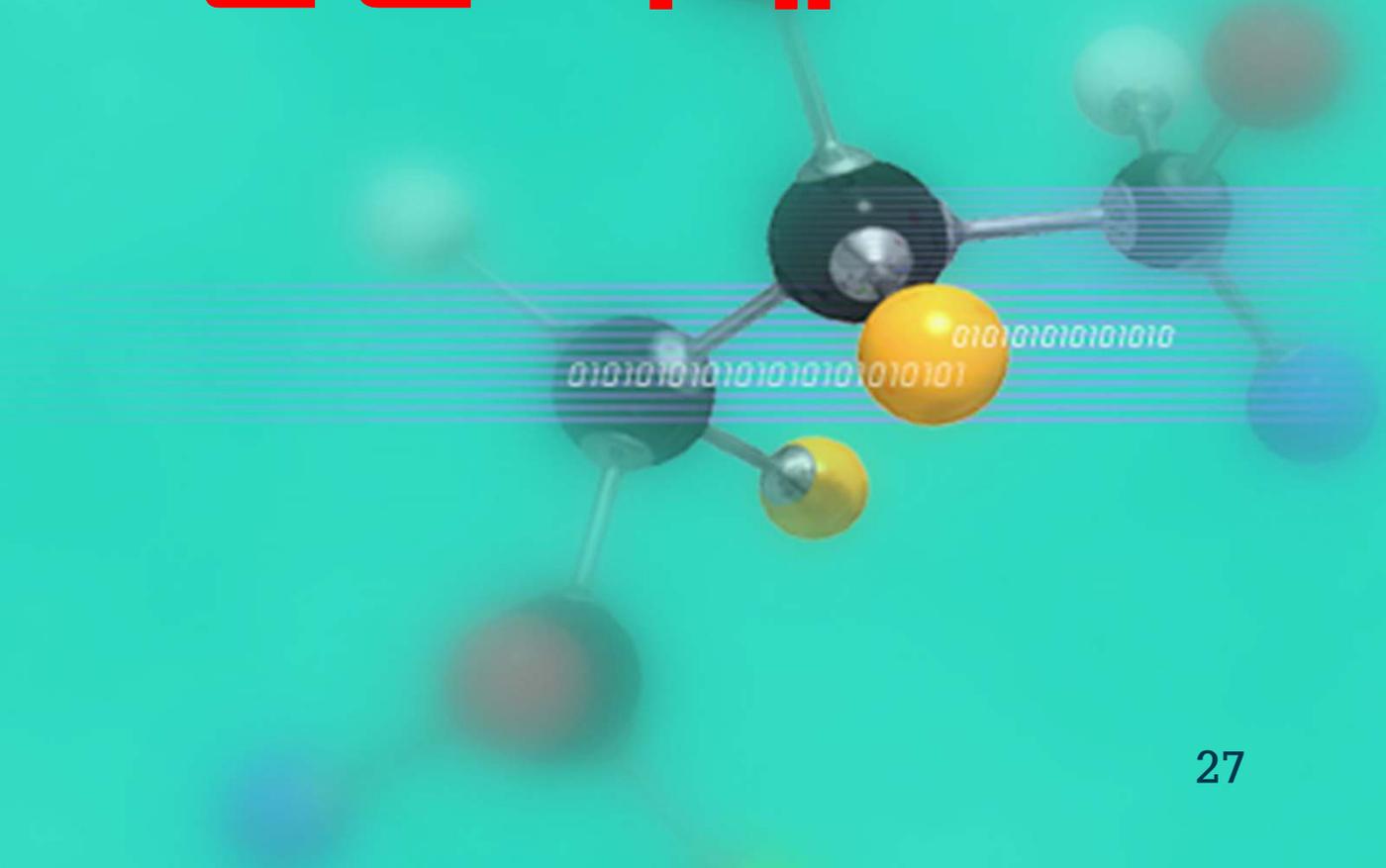
세계 특허분쟁사례

세계 주요 IT 업체의 특허 분쟁 사례

| 소송 제기 업체 | 소송 대상 업체 | 분쟁 내용 | 진행 상황 |
|----------|------------------|----------------------------------|-------------------------------|
| 램버스 | 하이닉스·마이크론·인피니온 등 | 램버스가 가진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약 10억달러 요구 | 소송 일부 진행 중 |
| NPT | 리서치인모션(RIM) | 미국 내 블랙베리 서비스 중단 신청 | RIM이 올해 초 6억달러 이상의 배상금 주기로 합의 |
| 개인 발명가 | 삼성전자 | 천지인 재판 방식에 대한 특허 사용료 최대 900억원 요구 | 법원·특허법원·특허심판원 등 3곳에서 소송 진행 중 |
| 디지털 네임즈 | 넷피아 | 넷피아가 보유한 한글 도메인 특허 무효화 요구 | 현재 소송 진행 중 |
| 아이피아 | 다오코리아·셀픽·에이엘테크 등 | USB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 | 특허심판원이 특허 침해 무혐의 판결 |
| 포젠트 | 어도비·매크로미디어·델 등 | 동영상 압축 방식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 10억달러 요구 | 일부 기업에 대한 소송 진행 중 |
| 마크 익스체인지 | 이베이 | '즉시 구매 서비스' 중단 요구 | 서비스 중단 요구 기각 |

?

주요 판결 사례



수지

수지 [樹脂, resin]

인쇄하기

× 닫기

요약

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

본문

용융가능하고 가연성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천연수지와 합성수지(플라스틱)로 크게 구분이 된다. 원래는 로진, 코우펄, 호박(琥珀), 엘리미, 카우리, 마닐라, 유향수지 등과 같이 식물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자연 유출물이 고화된 것을 말하였으나 나중에 셀락, 카세인과 같은 동물에서 유래된 것도 천연수지에 포함시킨다. 화석으로서 땅속으로부터 나온 것은 화석수지라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무에 함유된 테르펜 구조화합물과 플라본구조 화합물들이 축합되어 생성되며 분자량이 대개 10,000 이하인 극히 일부분이 다리결친구조를 가진다. 이들의 분자구조는 대개 단단한 환상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전이온도(T_g)는 대략 0~100℃에 있고 화학적 개질에 의하여 분자량이 증가하고 유리전이온도의 범위가 넓어진다.

유리전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점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성질이 있으며 많은 경우의 용용에 도움이 된다. 천연수지는 일반적으로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 에테르 등 유기 용매에는 잘 녹는다. 투명 또는 반투명성이며 황색 또는 갈색을 띠는 것이 많다. 모두 니스의 제조, 전기절연체, 비누의 혼화제, 인쇄잉크, 플라스틱 등으로 쓰인다. 이에 반하여 합성수지(플라스틱)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상태의 순수한 합성고분자재료를 말하며 이로부터 접착제, 코팅, 또는 플라스틱 제품이 얻어진다. 즉 수지를 충전제, 안료, 산화방지제 등과 같은 첨가제와 같이 섞어서 압출하면 플라스틱 재료가 얻어진다. 합성수지에는 석유정제시에 생성되는 것과 순수한 단량체를 중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있으며 분자량이 아주 낮은 경우 석유수지라고 한다.

나일론 재생칩은 수지가 아니다?

【판시사항】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일론 재생칩(CHIP)은 개정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일론 재생칩(CHIP)은 개정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4호,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제3종 제3류 제4호

* 대법원 1971.6.22. 선고 71누59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법과 기술



PVC 타일용 수성 아크릴계 접착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법원 2005허1684

-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등).
-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별지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 아크릴 에멀전 수지

- 청구항 1. 유리전이온도가 -40°C 이하의 호모폴리머를 가지는 메타아크릴 또는 비닐모노모 40 ~ 95중량%와, 유리전이온도가 0°C 이상에 있는 호모폴리머를 가지는 메타아크릴 또는 비닐모노모 2 ~ 50중량%와, 적어도 1종의 카르복실 메타아크릴 호모폴리머 1.0 ~ 5.0중량%와, 1 ~ 20몰 에틸렌 옥사이드로 에틸화된 메타아크릴 모노모 1.0 ~ 3.0중량% 및 설포네이트기를 가지는 아크릴 또는 비닐모노모 1.0 ~ 2.0중량%를 유화 중합한 **아크릴 에멀전 수지 100중량부**; 폴리카르복실산 소다염 0.2 ~ 1.0중량부; 유기질소유황할로겐계 복합제 0.2 ~ 1.0중량부; 탄산칼슘 40.0 ~ 56.0중량부; 점착부여제 17.0 ~ 30.0중량부; 및 저온 점착강화제 3.0 ~ 11.0중량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C 타일용 수성 아크릴계 점착제 조성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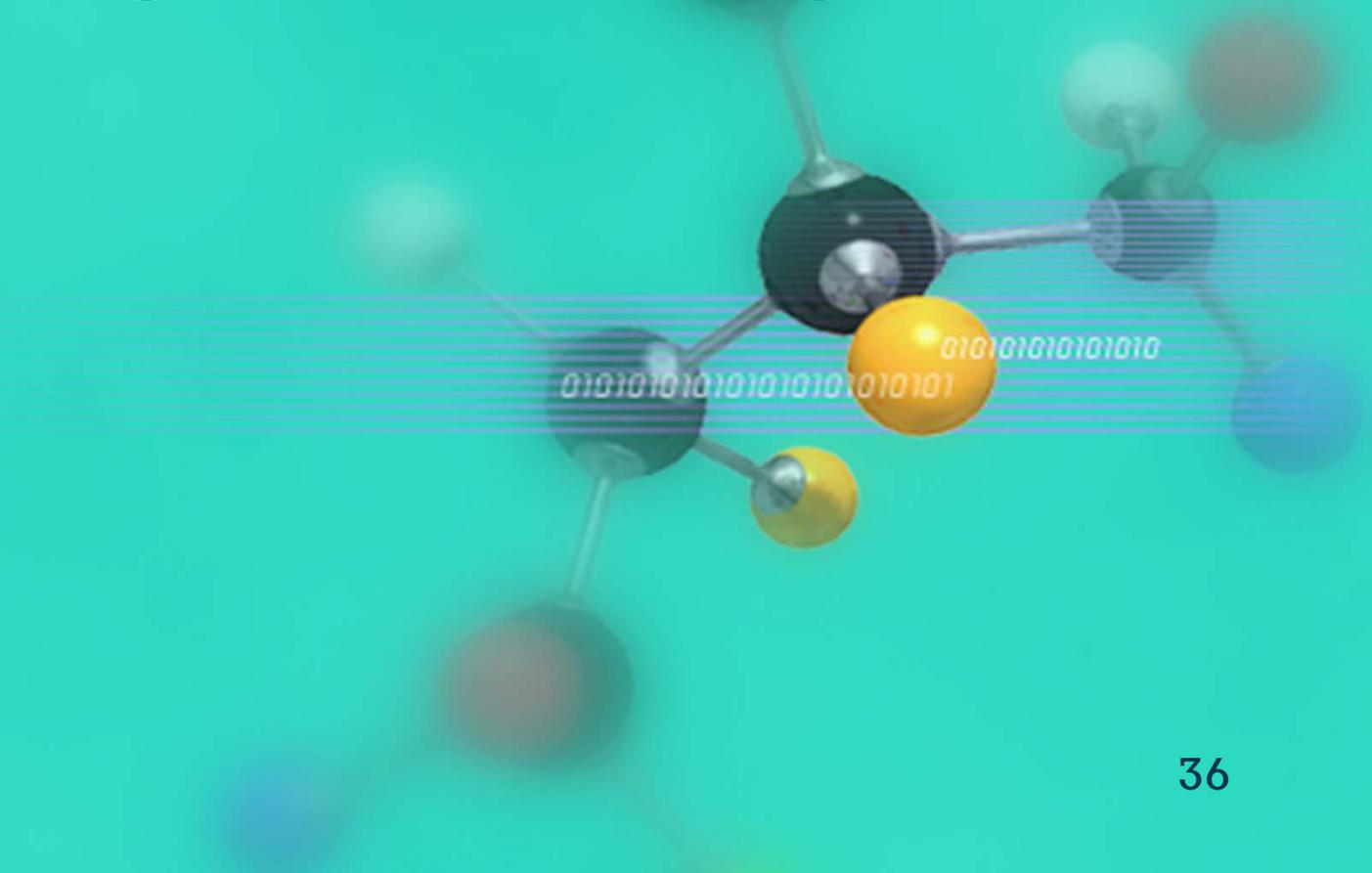
〈경피흡수제 및 이를 함유한 외용제 조성물〉

-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1nm 내지 500nm의 입자크기를 갖는 고분자(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생리활성성분을 포집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피흡수제.
- 청구항 2. 제 1항에서 있어서, 상기 고분자의 입자크기가 30nm 내지 15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흡수제.
-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리활성성분은 항생제, 항종양제, 항염증제, 해열제, 진통제, 항부종제, 진해 거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항간질제, 항궤양제, 항우울제, 항알레르기제, 강심제, 항부정맥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당뇨치료제, 항상성제, 호르몬제, 항산화제, 육모제, 양모제, 잇몸질환제(항균제), 미백원료, 콜라겐 합성 촉진제, 주름제거·완화제, 피부장벽강화제 및 피부보습력 증강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 종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흡수제.

〈내마모성이 향상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가교제 및 광개시제 존재하, 자외선 조사에 의한 광중합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수백 μm 깊이까지 가교된 내마모성이 향상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청구항 2. 가교제로서 이관능성 이상의 비닐 단량체와 광개시제와의 혼합물에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첨가한 다음 상온 내지 120°C 의 온도범위에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자외선을 조사하여 광중합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 1항에 따른 내마모성이 향상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제조방법.
- 청구항 12. 제 1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으로부터 제조된 성형품.
-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인공관절 또는 마찰, 마모 운동을 받는 기계 부품인 것이 특징인 성형품.

화학증폭형 레지스트 조성물



발명의 특징

| 이 사건 제1항 발명 | 인용발명1 |
|---|--|
| [a] 알카리 가용성 수지 | ① 알카리 가용성 수지 |
| [b]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산을 발생시키는 화합물(감방사선성 산 발생제) | ②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 광조사에 의해 산이 발생하는 산 발생제 |
| [c] 산의 존재하에서 [a]의 알카리 가용성 수지를 가교할 수 있는 화합물(가교제) | ③ 알카리 가용성 수지와 반응하는 가교제 |
| [d] 용제 | ④ 용매 |
| (i) 에스테르 용제와 젓산 알킬에스테르와의 혼합용제, 또는 (ii) 젓산 알킬에스테르와, 프로필렌글리콜 알킬에테르 및(또는) 프로필렌글리콜 알킬에테르아세테이트와의 혼합용제 | 셀로시브계, 프로필렌글리콜계, 에스테르계, 알콜계, 케톤계, 에테르계, 높은 극성의 용매, 이들의 용매혼합물, 이들에 부가된 방향족 탄화수소를 갖는 용매혼합물 |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

개미산 에틸

아세트산 메틸

아세트산 부틸

아세트산 이소아밀

부탄산 이소프로필

용제

젓산 에틸

젓산 부틸

프로필렌글리콜
디아테르에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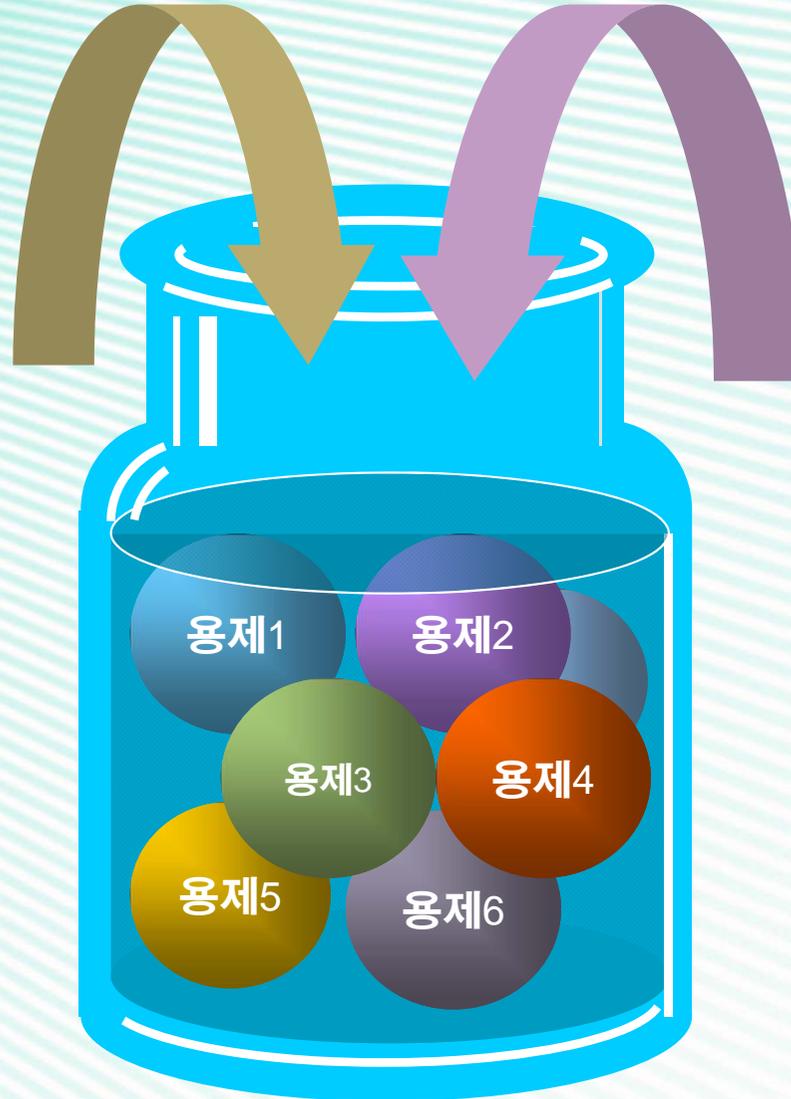
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d) 용제의 조성성분 비교표

| 혼합용제 | 혼합성분 |
|--------|--|
| (i) | 에스테르 용제/젯산 알킬에스테르 |
| (ii-1) | 젯산 알킬에스테르/프로필렌글리콜 알킬에테르 |
| (ii-2) | 젯산 알킬에스테르/프로필렌글리콜 알킬에테르아세테이트 |
| (ii-3) | 젯산 알킬에스테르/프로필렌글리콜 알킬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 알킬에테르아세테이트 |

발명의 구성 : 혼합용제의 선택?



Why ?

피고

원고

왜 용제를 사용?

고분자 수지를 용해하기 위하여?

왜 이런 용제만을?

?

왜 혼합용제?

?

Solubility Parameter,

- 고분자수지가 용제에 용해되려면, 그들간의 상호 용해도계수가 비슷한 수치이어야 서로 잘 혼합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고분자수지와 용제에는 각 고유의 용해도계수가 존재하여 특정 고분자수지를 용해하려면 이 값과 유사한 계수를 가진 용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클로로포름(Chloroform)인 경우는 19.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치와 비슷한 A(Polyisobutylene), B(Polymethylmethacrylate), C(Polyvinylacetate) 고분자는 용해 가능하지만, 용해도계수가 27.8에 해당하는 D(Polyhexamethylene adipate)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 출원발명에 사용되는 알칼리 가용성 수지를 용해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용해도계수를 가지는 용제를 선택해야 바람직합니다.

계산결과 : 표1,2에 대한 용해도계수 값

| 실시에 | 용제 | 용해도계수 | 평가결과 (도포성) |
|-----|------------------------|---|---------------|
| 1 | BA:iPB=50:50 | $17.6 \times 0.5 + 16.6 \times 0.5 = 17.1$ | 양호 |
| 2 | EL:BA:iAA=60:20:20 | $17.8 \times 0.6 + 17.6 \times 0.2 + 16.0 \times 0.2 = 17.4$ | 양호 |
| 3 | EL:PGEE:PGMEA=50:20:30 | $17.8 \times 0.5 + 18.4 \times 0.2 + 18.8 \times 0.2 = 16.34$ | 양호 |

| 비교예 | 용제 | 용해도계수 | 평가결과 (도포성) |
|-----|--------------|--|---------------|
| 1 | EL=100 | 17.8 | 불량 |
| 2 | ECA:BA=50:50 | $17.8 \times 0.5 + 17.6 \times 0.5 = 17.7$ | 불량 |
| 3 | ECA:EL=50:50 | $17.8 \times 0.5 + 17.8 \times 0.5 = 17.8$ | 양호 |

기술과 법



결론 : 항상 기초, 기본이 중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기술이 아프면 법원에 간다

사전관리

사후관리



결론 : 법적사실과 진실

- **발명의 특징**
-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 법원이 증인의 증언이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다.
- **법적사실과 진실[윤재운 판사 글 발췌]**
 - ✓ 재판상 나타난 증거를 증거법칙 내에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진실을 찾아 법적사실로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
 - ✓ 제도적 불완전함과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법적사실과 진실이 차이가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 법과 재판제도의 한계
 - ✓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불행과 불공평함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
- **기술보다는 언론플레이? 또는 포장?**

결론 :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

- 피로스(Pyrrhus)는 기원전 3세기경 북부 그리스 지방에 있는 에페이로스의 왕이었다. 당시 로마제국과 맞서 대승을 거둔만큼 그 전략과 위세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비교될 만한 인물로 그를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였다. 피로스 왕은 로마군과 두번째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겨우 승리를 쟁취한다. 승리는 했지만 아군의 피해가 워낙 커서, 이런 식의 승리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세번째 전투에서 피로스는 로마에 대패하고 그 나라도 몰락하게 된다.
- '피로스의 승리' 를 통해 **승리라는 결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오늘 피로스의 승리로 영광을 얻고 내일 망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하다.

조정/화해



